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3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9月 20日(金) 09時41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提案說明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96年度地方債借入計劃同意案
7.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8. 平昌郡地方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9.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 ——— 3 面
2. 3分自由發言(李慶鎭,禹康鎬議員)의件 ——— 3 面
3.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議長提議) ——— 7 面

4.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 8 面
5.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提案說明
(平昌郡守提出) ——— 8 面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金鍾永議員外6人發議)——— 9 面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議長提議) ———10 面
8. '96年度地方債借入計劃同意案 (平昌郡守提出) ———11 面
9.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12 面
10. 平昌郡地方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4 面
11.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6 面

(09時41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내 각종 행사 참석등 바쁜 일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 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0일 2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미 임기의 3분의1이 지났습니다만, 주민을 위하는 알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계획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報告事項

(09時44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3分自由發言(李慶鎭, 禹康鎬 議員)의 件

(09時49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이경진의원, 우강호의원 이상 두분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3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제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번 임시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접수순에 따라 먼저 이경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3분자유발언시간에 본의원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군에서는'99년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96년도에 이미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 하얼빈을 견학하고 우리군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7박8일간 연수팀을 5명으로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각과 과장, 계장님들은 각 과,계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후일 '99년행사에 응용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견문을 넓혔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군에서는 군수께서도 함께 동행하셔서 현지실태 및 오너로서의

행정감각을 충분히 익히고 돌아 오셨습니다.

이때 군수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안목과 시야를 넓히시고 폭넓은 구상을 완벽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후 불과 4개월후에 우리군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당시 공보실 관광계장께서는 대회상징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것이며, 이벤트사업은 어떻게 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변정비 현황은 어떠한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9년도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 오셨습니다.

또 그당시 기획실장께서는 방문단 견학에 따른 교섭 및 견학계획, 총괄적인 업무를 심혈을 기울여서 익혀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관광계장께서는 지금 재무과 징수계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때 총괄 업무를 배워 오셨던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현명하신 군수와 부군수께서 이런 안사가 잘못된 인사라고 판단하지 못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미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문제등에 관해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더더욱 중요한것은 국제 및 국내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유치 추진 및 준비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문화과에는 당시 해외연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사람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정례 유관기관 협의회에 우리군에서는 박용강 부군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님들은 9월 18일에서야 언론사를 통해서 일부 대회장소가 강릉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99동계아시안게임은 지역구 김기수국회

의원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군에서는 동계스포츠 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대한 관심사항이고, 본 대회 주경기장이 없는 평창지역에서 경기만을 치르고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미치는 혜택은 강릉에서 받게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평창군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특히, 박용강 부군수께서는 협의회가 끝나는 즉시 의회에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대처방안을 숙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끝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 이시간까지도 의회에 아무런 내용하나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 목적사업이 이행될 때 까지는 최대한 인원 장비를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활용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력관리를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회의내용을 비공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 본 대회의 핵심부분인 개·폐회식 행사가 강릉에서 치루어진다면 우리군에서는 이번 행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행사가 본군에서 차질없이 치루어 질 수 있게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오늘날 우리의 경제성장은 인간을 가난에서 해방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가져온 내용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 캠프를 출현 시켰으며, 경제적 풍요는 지난날 어려웠던 영웅시대 보

다 현실에 쾌락의 우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골, 초가집, 냇가, 아카시아내음 그득한 뒷동산 정말 눈물나도록 정겹고, 아름다운 뒷켠에는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살만큼이나 커다란 시름의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이제 뒷켠에 계신 눈물겹도록 소외받고 살아온 이들에게도 시선을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계포란 형태의 평창군 산세를 잘 아시죠?

물론 저보다도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옛부터 우리 평창군은 산자수려한 명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명당중의 명당인 지역입니다.

그러한 산세로 인해 훌륭한 지역봉사 인재를 배출했으며, 앞으로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인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찬바람, 눈보라 치는 겨울과 싸워 이긴 나무만이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평창군민과 우리군은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모든 것을 여름더위의 땀과 함께 흘려버리고, 결실과 수확의 계절처럼 준비하였다가 거두는 정성스런 날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출발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정리 되어야 합니다.

산고의 아픔 없이는 새 생명이 빛을 볼 수 없듯이 우리 평창군의 미래와 장기적 비젼을 위해서 또 평창군민의 전체적 다수의 균형 혜택 차원에서도 반듯이 시정되어야 하며, 이시간 이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기에 이 발언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투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지방재정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업우선투자순위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전정으로 두고 있는지?
비켜 나가기식의 예산확보와 집행부 편의 위주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없는지, 다시한번 꼭 확인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속성,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면하고, 의회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은 절대적으로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년도 못되어서 거짓말이 탄로나는 예산을 군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여 군민을 기만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2개월전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업무처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이러한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심의·의결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저 합니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평창군의 면모를 위해 집행부의 좀 더 현실적이고 정당성 있으면, 책임성 있는 노력을 부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3.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09時 56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9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參 照 >

· 의사일정

(끝에 실음)

.....

---

4.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09時57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평창군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경진 의원과 유돈문 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提案說明(平昌郡守提出)

(09時58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 제

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유는 필수경상비 및 일반경상비 변경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억 8,100만원이 증가한 95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억 9,400만원이 증가한 87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700만원이 증가한 7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6억 9,400만원이며, 지방세가 4억 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억 2,900만원과 보조금이 3억 3,600만원이며, 지방채가 9억원이 됩니다.

세출은 26억 9,400만원으로서 인건비 4,400만원, 물건비 1억 2,600만원, 이전경비 1억 8,400만원, 자본지출 25억 1,8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 감이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8,7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400만원입니다.

세입은 8,7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2,6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6,100만원이며, 세출은 8,700만원으로서 물건비 800만원, 자본지출 6,400만원, 융자및출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樂雲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金鍾永議員外6人發議)

(10時01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문을 말씀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기간은 '96년 9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結義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영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議長提議)

(10時0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사

전 동료의원간 합의된 대로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상훈 의원, 이수현 의원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6分 停會)

(20時05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8. '96年度地方債借入計劃同意案

(平昌郡守提出)

(20時06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申大松 : 재무과장 신대송입니다.

'96년도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종합민원실 신축, 평창군의회청사 증축 및 평창군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신축 등에 대하여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부분 또는 전액 확보를 하였으나, 확보 된 사업비도 어려운 군재정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미확보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사업비는 앞으로 전액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차입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함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채규모는 종합민원실 신축이 5억원, 평창군의회청사 증축 1억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3억원이며, 기채선은 지방재정공제회이고, 기채종류는 증서차입이고, 발생시기는 1996년도, 이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 參 照 >

· '96年度地方債借入計劃同意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20時08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6년 9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오전에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잠시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및 기타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에서 측량기자재 구입비 1,46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9동계국제대회추진위원회 지원금 1,000만원, 평창궁도장(대관정)건립비 1억원, 경제개발비에서 농산물직거래유통시설 5,000만원 등 총 1억 7,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김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平昌郡地方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平昌郡守提出)

(20時11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고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개하고 공개방법은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參 照 >

· 平昌郡地方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공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널리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를 전주민이 반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우리가 공보에도 게재하고, 반회보까지 게재할 계획입니다.

○ 禹康鎬 議員 : 반상회보말고 다른 쪽으로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우리가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신문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 신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공보를 주민들이 일일이 반아 볼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榮柱 : 예

○ 議長 金樂雲 :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20時15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姜慶錫 : 내무과장 강경석입니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및 장평오수처리장에 관리기능 인력의 정원 승인에 따른 군 본청 및 읍면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과에 종합운동장 관리 기능인력 지방기능직 8등급 전기원 1인을 순수 증원하고, 용평면에 장평오수처리장 관리 기능능력 지방기능직8등급 1인을 순수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장평 오수처리시설에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수처리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시설에도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姜慶錫 : 오수처리장을 평창, 진부, 도암은 환경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별로 운영이 미비해서 관계과에서 시설물을 읍면에 관리 전환을 하면서 직원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을 제가 요청을 할겁니다

○ 禹康鎬 議員 : 앞으로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도 환경보호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인원들을 각 시설로 내보낸다는 이 얘기입니까?

○ 內務課長 姜慶錫 : 예

○ 禹康鎬 議員 :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인력들에 대해서 인력확보를 철저히 잘 하셔서 기 설치된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 관리나 기계작동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20時 19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鎭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劃監査室長	金 榮 柱
民願奉仕室長	李 永 德
內 務 課 長	姜 慶 錫
財 務 課 長	申 大 松
地域開發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境保護課長	趙 圭 植
農 政 課 長	金 時 漢
商 工 課 長	金 昌 吉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孫 榮 澤
都 市 課 長	金 學 根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姜 仁 洙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敎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23 面에 실음)

.....

【 報 告 事 項 】

○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소집)

○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199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 8월 31일)

· 1995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 9월 10일)

·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6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
(이상 4건 - 1996년 9월 12일)

·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1996년 9월 13일)

o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종영의원외6인발의 - 1996년 9월 13일)

○ 의안처리사항

· '9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6년 7월 19일 - 평창군으로 이송)

· 평창군지방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
(1996년 7월 20일 - 평창군으로 통지)

○ 일반문서접수사항

· 읍·면보건지소근무자현황및주식회사변진의골재채취허가와관련한서면질문서
(1996년 7월 31일 - 이수현의원)

· '96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과관련한서면질문서
(1996년 8월 22일 - 이상훈 부의장)

· 자유발언신청서
(1996년 9월 18일 - 이경진 의원 우강호 의원)

議 席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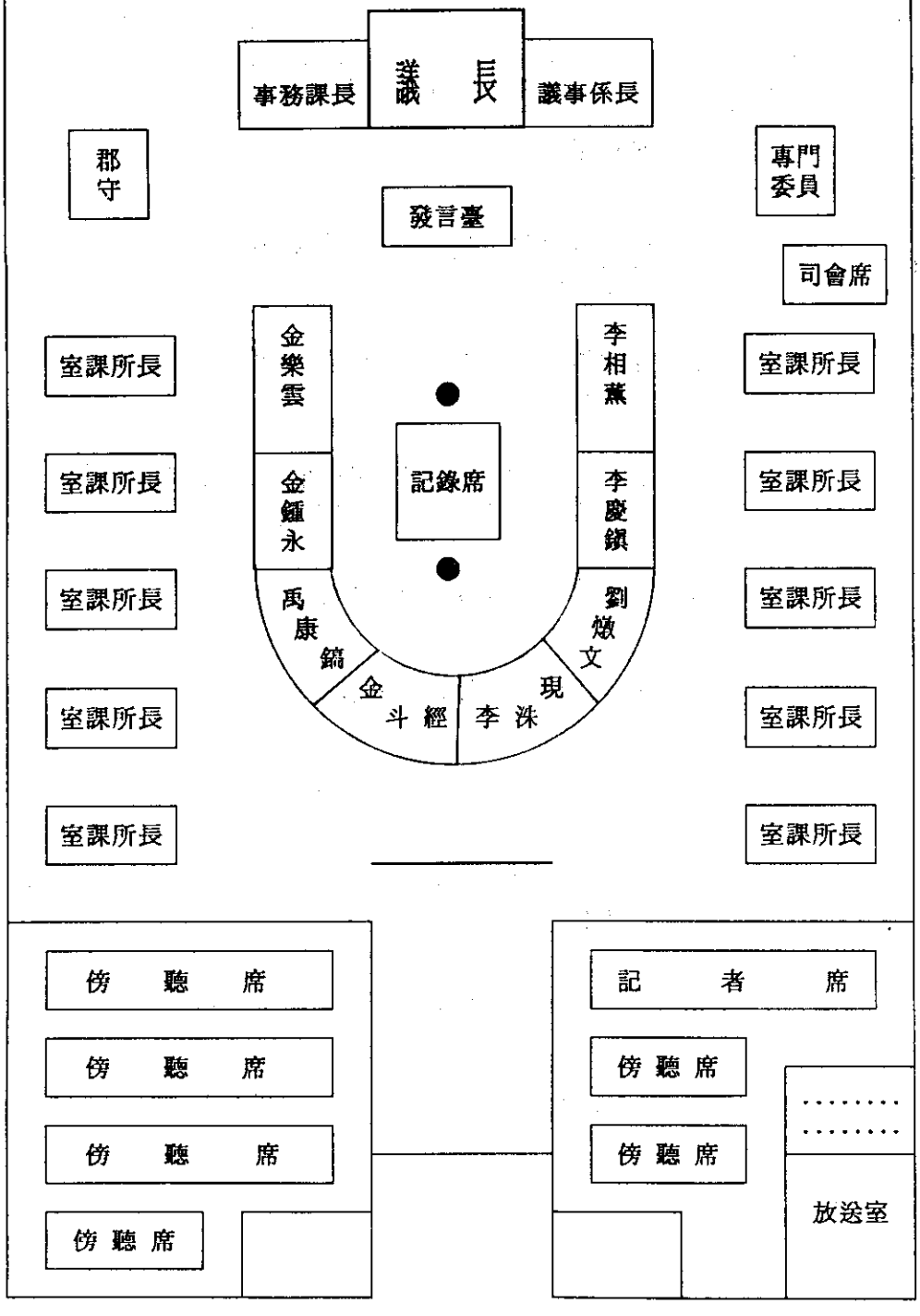
事務課長
議 長
議事係長
郡守
專門委員
發言臺
司會席
室課所長
金樂雲
李相薰
金鍾永
記錄席
李慶鎭
禹康鎬
劉煥文
金斗經
李洙現
傍聽席
記者席
放送室

제43회평창군의회(임시회)
의 사 일 정

제1차본회의 '96. 9.20(1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0(금) 09:30	-	○ 개회식	
09:40	제 1 차 본 회 의	1. 제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3.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6년도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 7.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 9.20(1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0(금) 10:30	제 1 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개요설명 나. 검토보고 다. 소관별심사 .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출(소관별) . 특별회계 세입·세출(소관별) 라. 계수조정, 심사의결	

'96 지 방 채 차 입 계 획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9. 12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9. 20

다. 상정일자 : 1996. 9. 20 제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종합민원실 신축, 평창군의회청사 증축 및 평창군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신축 등에 대하여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부분 또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 확보된 사업비도 어려운 군재정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미확보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사업비는 앞으로 전액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를 차입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져 합니다.

3.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채 규 모	기 채 선	기채종류	발행시기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종합민원실 신축	500	지방재정공제회	증서차입	1996년	년3%	2년거치10년균등상환	군비
평창군의회 청사증축	100	"	"	"	"	"	"
지역농업개발센타신축	300	"	"	"	"	"	"

4. 검토의견

- '96년 8월 23일 지방채발행 승인이 된 사항으로 군재정여건상 장기 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수긍이 되지만, 우리군의 '96년현재 지방채 총액이 예산규모의 17.2%인 146억5,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지방채 발행시기도 적정을 기하여 사업비 집행 또는 이월시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내무부 승인 범위내로써 동의에는 무리가 없는것으로 판단됨.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9. 12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9. 20

다. 상정일자 : 1996. 9. 20 제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 (안 제2조)

나.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공개 (안 제3조제1항)

다. 공개방법은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 (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본조례안은 '94년 12월22일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알권리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전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 타당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 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9. 12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9. 20

다. 상정일자 : 1996. 9. 20 제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종합운동장 및 장평오수처리장 관리 기능인력의 정원승인에 따른 군 본청 및 읍·면의 인력을 보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관광문화과에 종합운동장 관리 기능인력 (지방기능직8등급(전기원)) 1인 순수 증원 (안 제2조제1항)

나. 용평면에 장평오수처리장 관리 기능인력 (지방기능직8등급(기계원)) 1인 순수 증원 (안 제2조제5항)

4. 검토의견

가. '96. 7. 27일 정원승인이 된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기능 인력을 보강하는것은 타당 한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맞춰 관리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능인력 도 시설수에 맞게 점차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저촉 등의 사항은 없음.